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결함 사실을 공개하고도 장기간 시정조치가 지연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미시정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결함 사실과 시정조치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의 재공개 요건을 개선하는 한편, 경제적 보상의 진행상황 보고 및 시정조치 완료에 관한 규정을 합리화하고, 사용기한이 별도로 정해진 부품의 공급기한을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결함 사실을 공개한 날(제41조에 따라 일간신문에 공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시정조치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개시할 때까지 결함 사실을 공개한 날부터 3개월마다 시정조치계획서를 갱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2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제적 보상의 경우에는 진행률이 90퍼센트 미만이라도 제43조의3에 따른 결함 사실 등의 재공개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하여 경제적 보상 계획에 따른 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진행상황을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42조제6항 중 “확인된”을 “확인된 자동차 또는 법 제34조에 따른 튜닝으로 인해 결함이 있는 부품이 이미 제거되어 자동차 소유자가 제작결함을 시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43조의3제1항 중 “시정조치 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에 따른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70퍼센트 미만인”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정조치 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에 따른 개시일(이하 “개시일”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개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3. 제4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또는 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제49조의3제2항 본문 중 “이상”을 “이상(관련 규정에서 해당 부품의 사용연한을 8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연한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조치계획 등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①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2조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결함 사실 등의 재공개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1항의 개

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품의 공급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제원이 통보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라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의 진행률이 90퍼센트에 도달할 때까지 매 분기마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의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단서 신설>

④ · ⑤ (생략)

⑥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 중 법 제13조제1항제1호 · 제5호 · 제6호의 사유로 말소등록된 자동차 등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자동차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진행률을 산정할 때 시정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43조의3(결함 사실 등의 재공개

---. 다만, 경제적 보상의 경우에는 진행률이 90퍼센트 미만이라도 제43조의3에 따른 결함 사실 등의 재공개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경제적 보상 계획에 따른 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진행상황을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

---- 확인된 자동차 또는 법 제34조에 따른 튜닝으로 인해 결함이 있는 부품이 이미 제거되어 자동차 소유자가 제작결함을 시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제43조의3(결함 사실 등의 재공개

명령 등) ① 법 제31조제1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란 법 제31조제8항에 따라 보고한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의 진행률이 시정조치 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에 따른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7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서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을 신속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명령 등) ①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

-----.

1. 시정조치 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에 따른 개시일(이하 “개시일”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개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3. 제4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또는 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② (생략) 제49조의3(무상수리기간 및 부품의 공급기간 등) ① (생략) ② 자동차제작자등은 법 제3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의 원활한 정비를 위하여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8년 <u>이상</u>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해야 한다. 다만, 비슷한 다른 부품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③ ~ ⑥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의3(무상수리기간 및 부품의 공급기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이상(관련 규정에서 해당 부품의 사용연한을 8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연한 이상)</u> ----. ----- -----. ③ ~ ⑥ (현행과 같음)
---	---